

의안번호	2210254
의 퇴 인	신영대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3.
추계번호	25G267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, 조합 출자금 비과세 및 예탁금
저율과세 등 적용기한 10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,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,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5년 말로 10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3,495억원 등 2026~2036년 11년간 총 6조 2,730억원(연평균 5,70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	2032	2033	2034	2035	2036			
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(안 제69조의3)	-21	-21	-21	-21	-21	-21	-210	-21
	-21	-21	-21	-21				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507	-507	-507	-5,069	-461
	-507	-507	-507	-507	-225			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5,745	-5,745	-5,745	-57,449	-5,223
	-5,745	-5,745	-5,745	-5,745	-2,553			
합계	-3,495	-6,273	-6,273	-6,273	-6,273	-6,273	-62,730	-5,703
	-6,273	-6,273	-6,273	-6,273	-2,779			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의3 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10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5년 12월 31일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－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2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－ (개정안) 203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(203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36년 5%, 2037년 이후 9%	－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－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(202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26년 5%, 2027년 이후 9% － (개정안) 2035년 12월 31일까지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조합원·회원 및 준조합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(2036년부터 저율과세*) * 2036년 5%, 2037년 이후 9%	－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9조의3 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○	－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－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	－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
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
 -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, 2020~2024년 감면실적 평균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

나.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6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6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다.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36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

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36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

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개요) 동 감면은 어업용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%를 감면하는 제도임
- (감면실적)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동 제도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후, 연도별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

[표 2]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: 2017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p	'20~'24년 연평균
감면실적	신설	19	19	19	17	24	25	20	21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2) 추계 방법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0~2024년 감면실적 평균(21억원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,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

3) 추계결과

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1억원, 2035년 21억원 등 10년간 총 210억원(연평균 2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	-21	-21	-21	-21	-21	-21
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(안 제69조의3)	2032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	-21	-21	-21	-21	-210	-21

나. 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

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709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634억원(9.6%↑) 수준

[표 4]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 ¹⁾	2년 평균 ²⁾	5년 평균 ³⁾
조세감면액	492	491	611	868	709	789	634
(증감률)	(△37.2)	(△0.2)	(24.4)	(42.1)	(△18.3)		(9.6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3~2024년 평균

3) 2020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

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789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35년 9%p, 2036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35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6년은 5%, 2037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5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	2037
현행(A)	5	9	9	9	9	9	9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0	0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4	0

- 2023년~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(789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5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6년 11년간 총 5,069억원(연평균 461억원)으로 예상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	2032	2033	2034	2035	2036			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507	-507	-507	-5,069	-461
	-507	-507	-507	-507	-225			

다.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

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,647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5,725(27.8% ↑) 수준

[표 7]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¹⁾	2년 평균 ²⁾	5년 평균 ³⁾
조세감면액	4,372	3,269	3,113	6,226	11,647	8,937	5,725
(증감률)	(△13.9)	(△25.2)	(△4.8)	(100.0)	(87.1)		(27.8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3~2024년 평균

3) 2020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8,937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 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35년 9%p, 2036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
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35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36년은 5%, 2037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8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	2035	2036	2037
현행(A)	5	9	9	9	9	9	9	9	9	9	9	9
개정안(B)	0	0	0	0	0	0	0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9	△4	0

- 2023년~2024년 이자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8,93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 (8,937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5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36년 11년간 총 5조 7,449억원(연평균 5,223억원)으로 예상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	2032	2033	2034	2035	2036			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5,745	-5,745	-5,745	-57,449	-5,223
	-5,745	-5,745	-5,745	-5,745	-2,553			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	박성은	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